
2023년 정보보호(정보보안, 물리보안)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안내서 및 운영 가이드라인

2023. 3.

 **목 차** 

I. 사업개요	1
II. 사업내용	4
III. 지원조건	7
IV. 지원사업자 선정평가	8
V.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신청	10
VI. 사업수행	12
VII. 지원금 집행	15

I.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국내 중소·중견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의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인증 획득을 통해 선결적 장애요인 해소가 필요
- 정보보호 선진국 해외인증제도, 국제보안인증 등 해외인증 획득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해외진출 확대

□ 지원내용

- 국내 중소·중견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대상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전적 필수규격인증을 포함한 국제/선진국 정보보호인증제도 획득목적의 제반소요비용을 지원
 - 제반소요비용에는 인증비(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), 심사비, 시험비, 컨설팅비, 기타비용(인증포럼활동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)이 포함
 - ※ 연회비의 경우, 인증획득 후 최초 연회비에 한함
 - ※ 사후심사, 갱신심사의 경우 지원불가
- 획득추진대상 해외인증제도 소요비용 및 참여기업의 과제추진계획에 따라, 총사업비 결정
 -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, 중견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 또는 70%의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(기업당 최대 7.5천만원(2개사), 3.6천만원(1개사)까지 지원가능)
 - ※ (1)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(전년기준)의 중견기업 75%, (2) 매출액 3천억원 이상(전년기준) 중견기업 70% 지원비율 적용(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이드라인 준용)
 - ※ 기업별 최대 지원 금액은 해외인증별 취득 비용 및 기타 적정성 검토 후 협회에서 결정
 - ※ 자세한 내용은 4 페이지 [사업내용] 확인

※ 참고 : 정보보안/물리보안 해외인증제도목록 예시

분류	소분류	인증/표준/포럼(예시)	비고
정보보안제품 (H/W, S/W)	제품 보안성평가	CC인증	국제
		최고등급 보안인증 (CSPN_Certification de Sécurité de Premier Niveau)	프랑스
	제품 성능평가	ICSA Labs	미국
		Tolly Group	
		Check Mark	영국
		Virus Bulletin	독일
		AV_Test	
	STQC, AV Comparatives, Malware Feeds from MRG Effitas, Mitre Att&ck, Miercon...	기타	
암호모듈검증	CMVP	미국	
정보보호 서비스	정보보호 관리체계	ISO 27001	국제
		FISMA, CMMC, SOC, CCPA	미국
		Cyber Essentials	영국
		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	중국
	클라우드 보안평가*	FedRAMP, CSA STAR	미국
디지털 포렌식 등 시험기관 평가	ISO 17025	국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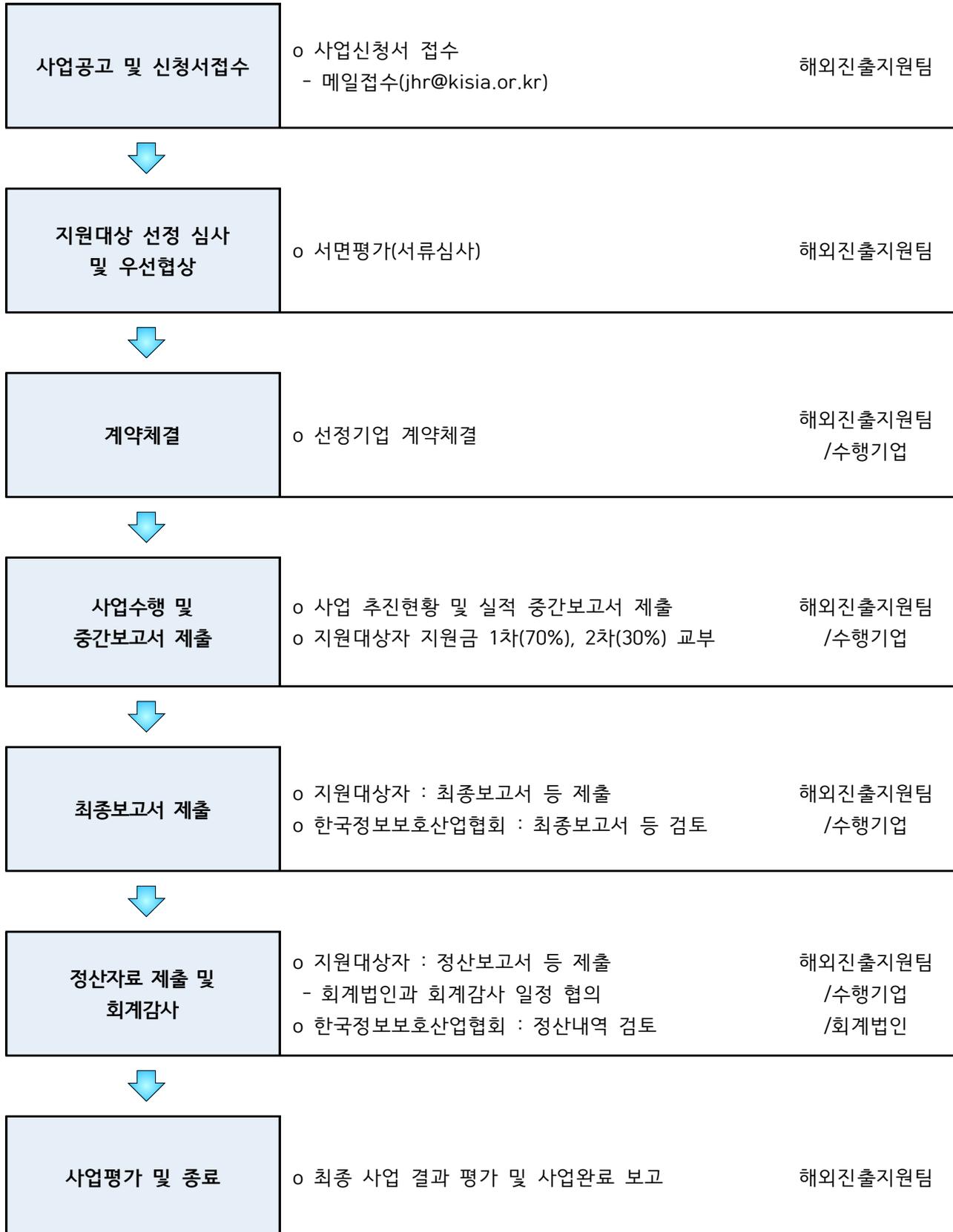
* 클라우드 보안평가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 포함

분류	소분류	인증/표준/포럼(예시)	비고
물리보안제품 (H/W, S/W)	바이오인식	CC인증*	국제
		FIDO	국제
		BC WG (Biometric Consortium Working Group)	미국
		DoD CDTDPO (Counterdrug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fice)	
		GSA EPD Lab (FIPS-201)	
		FBI인증 (Fingerprint Image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)	
		NIST ITL (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)	캐나다
		CSE-EWA (Common Security Establishment - Electronic Warfare Associates)	
		BSI, TeleTrust	독일
	IPA	일본	
	영상감시기기	ONVIF (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)	국제
		PSIA (Physical Security Interoperability Alliance), UL CAP(Cybersecurity Assurance Program)	미국
		I-LIDS, CPNI, CES, Secure by Default(NCSC)	영국

* CC인증은 정보보안/물리보안제품 공통

※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1차분류하고, 정보보안은 제품과 서비스, 물리보안은 바이오인식, 영상감시기기로 2차분류하여 정보보호 해외인증을 목록화함

□ 사업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

II. 사업내용

1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사업기간	협약 후 ~ 2023.12월 이내												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정보보호(정보보안, 물리보안) 중소·중견기업, 법인만 가능 (단독참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』에 해당하는 기업 * 중견기업은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』에 해당하는 기업 (중견기업 중 정부지원 75%의 비율로 신청한 기업은 매출증빙 필요함) * 단독참여(컨소시엄 불가) ○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연도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휴·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③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어 있는 기업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 ⑤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신청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(증빙필요) ⑥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⑦ KISIA 해외진출지원팀 2023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(수출GO)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		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 인증비, 심사비, 시험비,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비, 국제인증관련 포럼·단체 활동비용 등 기타비용 등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제반소요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ISIA는 수혜기업에게 본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한 향후 5년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증비</td> <td>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비</td> <td>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비</td> <td>인증획득을 위한 제품을 테스트한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컨설팅비</td> <td>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비용</td> <td>인증포럼활동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인증비	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	심사비	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	시험비	인증획득을 위한 제품을 테스트한 비용	컨설팅비	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	기타비용	인증포럼활동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
구분	내용												
인증비	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												
심사비	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												
시험비	인증획득을 위한 제품을 테스트한 비용												
컨설팅비	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												
기타비용	인증포럼활동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												

지원방식	<p>※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, 중견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~70%의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함(단, 기업당 최대 7.5천만원 까지 지원가능)</p> <p>※ 단, 기업은 예산사용 관련 세부내용을 KISIA가 요청할 시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91 365 1214 557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정부지원비율</th> <th rowspan="2">기업당 지원한도</th> </tr> <tr> <th>중소</th> <th>중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5%</td> <td>70% 또는 75%</td> <td>7.5천만원 (정부지원금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1)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(전년기준)의 중견기업 75%, (2) 매출액 3천억원 이상(전년기준) 중견기업 70% 지원비율 적용(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준용)</p> <p>※ 기업별 최대 지원 금액은 해외인증별 취득 비용 및 기타 적정성 검토 후 협회에서 결정</p>	정부지원비율		기업당 지원한도	중소	중견	75%	70% 또는 75%	7.5천만원 (정부지원금)
정부지원비율		기업당 지원한도							
중소	중견								
75%	70% 또는 75%	7.5천만원 (정부지원금)							
선정규모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1.86억 원 / 3개社</p>								
선정방법	<p>(서면심사) 서류심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평가를 거쳐 신청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.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* 본 공고 신청률이 저조하여 정부지원금 미소진시, 2차 추가 선정(2분기內) * 2차 추가 선정시, 1차 선정결과에 따라 선정 분야 조정 가능 						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(금액, 기업수)는 조정될 수 있음 ○ 민간부담금은 현금 출자만 인정 								

② 신청서 제출방법

- 제출기한 : 2023년 3월 13일(월) ~ 2023년 3월 31일(금)까지
 ※ 제출기한 이후 접수불가
- 제출방법 : jhr@kisia.or.kr로 메일 제출
- 온라인 제출 자료

번호	서류명	수량	비고
01	사업 신청서	1	서식1 참조 필수
02	수행계획 요약서	1	서식2 참조 필수
03	사업수행계획서	1	서식3 참조 필수
04	중소·중견기업확인서	1	유효기간 내 필수
05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1	붙임1 참고 필수
06	유사사업실적 관련 서약서	1	붙임2 참고 필수
07	법인 인감증명서	1	- 필수
08	사용인감계	1	- 선택
09	법인등기부등본	1	- 필수
10	사업자등록증	1	- 필수
11	청렴계약이행각서	1	붙임3 참고 필수
12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1	- 필수
13	최근 3년간 재무제표(세무사도장 날인必) (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가능서류)	1	- 선택
14	기타(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서 등)	1	- 선택

- ※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- ※ 유효기간이 임박한 중소기업확인서는 미리 갱신 부탁드립니다.

- 선정평가 : 2023년 3월 중
- 문 의 :
 - 해외진출지원팀 예리원 선임(☎02-6748-2046, yelee@kisia.or.kr)
 - 해외진출지원팀 정혜린 주임(☎02-6418-5645, jhr@kisia.or.kr)

③ 제출 유의사항

- 수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요약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해야하며, 제출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해야 함
-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,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Ⅲ. 지원조건

①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

-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업 운용지침 및 지원 조건,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*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며,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 등을 적용 예정

②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, 사업수행계획 등 위반시 제재조치

- 제출서류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, 협약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년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- 허위 영수증 제출, 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-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- * 다만, 계약체결 이전 중단 및 포기 사업자는 예외
-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상황 및 사업 집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협약 또는 지원조건 위반, 평가 점수가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는 사업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, 중도해지,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금환수금기술표 관련 조치 등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

③ 기타 조건

- 지원대상 사업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게 있음
- 사업 관련 모든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는 총 사업비에 반영 불가
- 사업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동 사업에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
- 전년도 수혜기업 중 실적이 없을 경우 차년도에 감점 적용 할 수 있음

IV. 지원사업자 선정 평가

① 평가위원회

-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내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
 -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
- 선정평가 : 2023년 3월 중
 - * 일시 변경 시 접수기업에 별도 안내
 - * 신청분야별 경쟁선발 조건이 아닐 경우, 해당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예정

②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

- 평가방법
 -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수행계획요약서, 증빙자료 등에 관한 서류심사
 -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 평가
- 선정기준
 -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
 - 평가위원별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 후 총점 및 평점 산출
 - 지원 분야별 상대평가 및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선정

③ 평가항목 및 배점

구 분	평가기준	배 점
I. 제안기업 일반		25
1. 사업 현황	- 동 분야의 사업성과 및 수출현황 등 해외진출 현황	15
2. 제품 및 기술현황	- 솔루션 및 서비스 내용의 구체성 등 제품의 종합 평가	10
II. 사업목표 및 타당성		25
1. 추진전략	- 인증획득을 통한 해외진출사업 활용계획의 적절성 (대상국가 선정 및 진출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)	15
2. 해외인증획득의 필요성	- 당해연도 안에 신청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경우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지원의 타당성 (진출국가 및 현지기관 인증서제출 관련 의무 요구사항 등)	10
III. 인증획득 가능성		20
1. 인증획득 단계의 성숙도	- 인증획득 추진절차 중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(현재 추진 중인 시험인증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접수증, 견적서 등 증빙)	10
2. 참여기업 수행역량	- 인증획득을 위한 참여기업의 전담조직, 전문가 보유여부, 인증획득경험 여부 등 수행능력 평가	10
IV. 추진계획의 적합성		20
1. 추진일정 및 보고 계획	- 일정관리의 구체성 및 적정성	10
2. 제안금액의 적정성	- 사업계획서와 제안금액의 적정성	10
V. 기타		10
1. 기대효과분석	- 인증획득을 통해 해외수출 연계 및 확장성	5
2. 기타 사항	-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기업 (2점) - 최근 3개년 KISIA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이력 (사업당 1점, 최대 3점)	5
합 계		100

V.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신청

1 협약안내

- 수행기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최종협상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
<협약체결 관련 제출 서류>

번호	서류명	수량	사용처
01	사업신청서 + 수행계획 요약서 + 수행계획서	1	협약체결
02	협약서	1	
03	이행(계약)보증보험(정부지원금의 10%)	1	
04	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	1	
06	법인등기사항증명서	1	
07	사업자등록증명원	1	
08	청렴계약이행각서	1	

- ※ 협약서상의 협약시작일은 보증증권, 국세납입증명서, 지방세납입증명서 서류의 발급일 중 가장 늦게 발급된 날짜를 시작일로 함
- 선금은 지원금의 70%를 지급*하며, 선금 지급 신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증권(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)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협약 체결(4월 중) 및 지원금(선금) 신청 제출 서류 확인 완료 후 기업 사업비 통장으로 선금 지급 예정 (지급 시기는 추후 변동 가능)

<지원금(선금) 신청 관련 제출 서류>

번호	서류명	수량	사용처
01	지원금(선금) 신청 공문	1	선금금 신청
02	사업비청구서	1	
03	1차 지원금(선금) 사용내역서	1	
04	통장사본 및 기업부담금 입금내역	1	
05	이행(지급)보증보험(정부지원금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)	1	
06	국세 및+ 지방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내)	1	
07	4대보험완납증명서*(유효기간내)	1	

- ※ 4대보험완납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: 국민연금(납부)증명서, 건강보험완납증명서
4대보험완납증명서 유효기간 : 제출 당월 10일 ~ 익월 9일(휴일 발생기간 만큼 산입) 필수확인
- 잔금은 지원금의 30%를 지급하며, 잔금 지급 신청 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중간보고서 제출 직후(9월 중) 지급 예정 (지급 시기는 추후 변동 가능)

2 참고사항

○ 이행(계약)보증보험 증권

- 보험가입액 : 정부지원금의 10%
 - 피보험자 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
 - 보험기간 : 계약시작일 ~ 계약종료일(협약기간) 다음날 까지
 - 보증내용 : 정보보호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계약이행보증
 - 보험계약자 : 지원 대상 법인명
- ※ 협약서 사본을 사용하여 협약 체결 전일 또는 당일 날짜로 사전 발급

○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

- 보험가입액 : 정부지원금(100%)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
- 피보험자 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
- 보험기간 : 계약시작일 ~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
- 보증내용 : 정보보호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반환지급보증
- 보험계약자 : 지원 대상 법인명

○ 전체사업비 관리할 통장계좌

- 전체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로 별도통장 계좌 및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

VI. 사업수행

1 보고서 등 제출

-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: 매달 5일 이메일 제출 [서식10]
- 중간보고서 : 2023년 8월 18일(금) 18시까지 제출 [서식4]
- 결과보고서 : 2023년 12월 19일(화) 18시까지 제출
 - * 정량정성적 성과 및 사업 추진 과정 발생 증빙(영수증, 사진 등) 첨부하여 상세히 작성 必
 - * 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중간보고와 결과보고 시 별도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발표를 요청할 수 있음
 - * 제출기한 미준수하는 경우, 최종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
- 회계감사보고서 : 2023년 12월 19일(화) 18시까지 제출 [서식7]
 - * 정산보고 제출 전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, 일정은 회계법인과 개별적으로 협의(정산 부분 참조)
 - * 주요 산출물 제출 일정 변동 가능
 - * 각 보고서는 주관기업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

2 제출서류

번호	서류명	수량	보고내용	비고
01	사업추진현황 월간보고	1	성과보고(매월)	서식 10
01	중간보고서	1	중간보고	서식 4
01	결과보고서(산출물 등 관련 증빙 포함)	1	결과보고	서식 5
01	정산보고서	1	정산보고서	서식 6
02	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거래내역 확인서	1		
03	지원금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(전체페이지)	1		
04	회계감사보고서	1		서식 7
05	정산내역서	1		서식 8
06	지출원인 근거서류, 영수증, 계약서 등 회계감사시 제출된 서류일체	1		
07	잔액/불인정액 등 송금(입금)증	1		

③ 제출방법

- 글로벌성장단 해외진출지원팀 정혜린 주임(jhr@kisia.or.kr) 앞으로 신청양식 메일 제출

④ 사업 및 예산계획의 변경

-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마감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음
 - 예산 변경 : 각 항목별로 30% 초과 변경 시 변경 승인요청
 - 기타 사업수행 계획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(대상국가, 대상 품목/서비스, 사업책임자 변경, 합병/폐업 등)
- 변경승인 요청 및 변경신고서 제출 방법
 -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공문과 함께 e-mail 제출

⑤ 정산 및 감사 절차 등

- 수행기업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선정한 지정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야 함
 - 지원대상 사업자가 회계 감사 비용을 지급하며,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
- 수행기업은 정산보고서 등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
-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 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기업에게 송부하여야 함
- 수행기업은 회계감사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제출하고, 정산잔액은 반납하여야 함
 - * 회계감사보고서 실시 기업의 직인과 담당 회계사 직인 날인 필수
 - * 정산내역이 수록된 파일, 송금내역서, 송금영수증을 e-mail로 별도 전송
-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산결과 검토(필요시 실사)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할 수 있음

6 정산잔액 송금방법

- 송금계좌
 - 계좌 : *****_**_***** ※ 별도안내
 - 예금주 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
- 송금 의뢰인명 표시방법(송금내역서의 송금의뢰인과 일치)
 - 기업명으로 송금
- 송금 후 송금 영수증(또는 입금증)을 스캔하여 사업담당에게 e-mail 송부
- 최종 정산잔액 정산내역서 송부 : [서식6] 참조

7 기타 참고사항

-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지원한 정보보안/물리보안 해외인증획득 지원 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가·감점 부여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: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
 -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: 해당 기업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
 - *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,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함
 - 본 공고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이드라인을 준용함

VII. 지원금 집행

1 집행기간

- 총 사업비(자체부담금+지원금)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
 - * 단, 회계감사비용 등은 예외
 - * 카드 사용의 경우 집행기간은 카드 사용일 기준이 아닌 사용금액 결제일 기준임
- 총 사업비는 **협약기간 마감일까지 반드시 전체 소진**
 - * 사업비 전체 소진 불가 경우,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KISIA 담당자와 사전 협의

2 계좌개설 및 관리

- 각 수행기업은 사업비 관리 계좌(법인명의)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카드(체크 또는 신용카드)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

3 지원금 사용원칙

- 총 사업비(자체부담금+지원금)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가능하고,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
- 수행기업은 **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이 원칙**이며, 정산시 총 사업비중 지원금 집행 잔액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은 전액 반납
 - * 자체부담금 소진 전에 KISIA 정부 지원금 선 사용 불가
-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변경의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

<총 사업비 사용가능 회계계정 및 불가계정>

총 사업비 사용가능 계정	총 사업비 사용불가 계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직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(현지컨설턴트 활용 등) ○ 수수료 및 사용료(해외인증 수수료, 테스트장비 운송 등) ○ 임차료(장비임대 등) ○ 용역비(통번역, 법률검토, 현지대행기관 활용 등) ○ 기타(회계감사비, 이행보증보험료, 환차손,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수수료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직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비(국내여비, 국외여비) ○ 홍보비(해외홍보자료 제작 등) ○ 자산 취득비(장비구입 및 수리비), 감가상각비 ○ 자가시설 이용료 ○ 회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○ 전화요금 등 경상경비 ○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○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□ 인건비

4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

구 분	종 류	인정범위	증빙자료
현금 사용 증빙	현 금 영수증	·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	사용내역서
	세 금 계산서	·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(인터넷뱅킹 권장)	송금영수증(은행발급), 원천징수영수증, 계약서, 사용내역서(일수, 단가, 내용 등 포함), 회사소개서(또는 이력서), 사업자등록증(또는 신분증 사본)
	수 령 확인증	·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(인터넷뱅킹 권장) ·자필서명 시에만 인정	송금영수증(은행발급), 원천징수영수증, 계약서, 사용내역서(일수, 단가, 내용 등 포함), 회사소개서(또는 이력서), 사업자등록증(또는 신분증 사본)
	간 이 영수증	·3만원 미만의 지출에 한함 ·총액 1백만원까지만 인정 (단일 건에 대해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여러 개로 분할 처리하는 경우 불인정)	사용내역서
체크/신용 카드 사용 증빙	사 용 영수증	·사용 후,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·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(별도카드 불인정)	사용내역서, 지급영수증 (카드사 발급)

-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,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, 추후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
-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스캔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
-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,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

5 해외에서의 사업비 사용원칙

- 해외사용 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용역비, 전문가활용비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
 - 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(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제)
 - 현금 환전(매입, 매출)은 환전하는 일자의 환율 적용
 - ※ 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
- 3만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,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함
 - ※ 출장 품의 및 결과보고 정산 서류에 첨부 (사진 및 회의록 등 증빙 필수)
- 가이드비, 통역비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, 신분증 사본, 용역 일수 및 단가, 용역제공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
-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계획 금액을 초과한 사업비 소요 계획은 불인정하며,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요청